

「장애인일자리 사업(일반형일자리)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구 미 시 장

2. 제안이유

- 가. 민간기관의 인프라를 활용하여 장애 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다각화된 직무를 개발함으로써, 장애인의 취업 경쟁력 강화 및 지속가능한 고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사업을 위탁하고자 함.
- 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사무를 위탁하고자 「구미시 사무위탁 조례」 제1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사 무 명 : 장애인일자리 사업(일반형일자리)
 - 나. 추진근거 및 필요성
 - 1) 「장애인복지법」 제21조
 - 2)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3조의2
 - 3) 「구미시 장애인일자리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5조
 - 4) 「구미시 사무위탁 조례」 제16조
 - 다. 위탁사무
 - 1) 장애인일자리 참여자 모집 및 선발, 관리
 - 2) 장애인일자리 사업 직무 개발 및 참여자 배치, 사업운영 전반
- 라. 위탁기간 : 위탁개시일로부터 3년간 * 2027. 1. ~ 2029. 12.

마.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940,110천원 * 2027년 예산 기준

(단위: 천원)

계	인건비	퇴직금	운영비	비고
940,110	776,520	74,310	89,280	

바.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선정심의위원회 심의

사. 적정성 검토결과 : 적정 ※ 2026년 제2차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

아. 부서의견

- 1) 해당 사업은 보건복지부 주관 사업으로 「장애인일자리 사업안내」 지침에 따라 민간수행기관을 선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구미시 장애인일자리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민간위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 2) 해당 사업은 매년 선정인원 대비 약 2배의 신청자가 지원하는 등 참여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미선발 대기자 적체 해소 및 안정적인 일자리 공급체계 확보가 필요함.
- 3) 민간기관의 전문인력과 운영 경험을 적극 활용하여 장애 유형별 특성에 부합하는 맞춤형 직무를 개발함으로써, 장애인의 취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민간 고용 시장으로의 전이를 촉진하여 안정적인 자립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본 사업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되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21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3조의2, 「구미시 장애인일자리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5조, 「구미시 사무위탁 조례」 제16조

나. 예산조치 : 2027년도 예산편성

5.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 민간기관의 인프라를 활용하여 장애 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다각화된 직무를 개발함으로써, 장애인의 취업 경쟁력 강화 및 지속가능한 고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사업을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 검토 결과,

- 본 사업(일반형일자리)은 주 14시간 단시간 근무하며 사회참여 경험에 주된 목적을 두는 ‘복지일자리’와 달리, 주 40시간(전일제) 근무를 통해 행정 및 복지서비스 지원 등의 고도화된 직무를 수행하며 향후 민간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을 준비하는 실질적인 자립 기반 성격의 사업임.
- 그동안 시에서 직접 수행하는 체제에서는 주로 시청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단순 행정 보조 업무 위주로 배치되는 한계가 있었으나 이를 민간 복지기관 등에 위탁함으로써, 민간이 보유한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장애 유형과 개인별 특성에 부합하는 다각화된 맞춤형 직무를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위탁의 필요성이 인정됨.
- 장애인들의 참여 수요가 가장 높은 핵심 일자리 사업인 만큼, 민간 영역(복지시설, 비영리단체 등)에서 양질의 신규 근무처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매칭하는 수탁기관의 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참여 경쟁이 치열한 점을 고려하여 취약계층에게 평등한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근로자를 선발하는 체계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임.

-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위탁을 처음 시작하는만큼 사업 초기 운영상의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고, 본 사업이 장애인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고용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수탁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지도·감독과 행정적 지원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